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6월 1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 
법무부장관 박성재

●대통령령 제34560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)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(지청을 포함한다)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, 사법경찰관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,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(이하 이 조에서 “회의”라 한다)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
3.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
4.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검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, 의사 및 변호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논의와 의견 청취를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보호·지원이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